

의안
번호

371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 폐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 폐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21.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371호
- 다. 제출일자 : 2024. 11. 7.
- 라. 회부일자 : 2024. 11. 15.

2. 제안이유

-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매 확대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개발된 공동브랜드 ‘트리즘’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조례이나, 2010. 4. 3.자로 상표등록이 소멸되어 조례의 존속의미가 없음.

3.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9. 19. ~ 2024. 10. 10.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은 1999년 10월 2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폐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판매 확대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개발된 공동브랜드 ‘트리즘’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2010년 4월 3일 자로 트리즘의 상표등록이 소멸되어 존속 의미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